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부 칙
<p>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p> <p>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p> <p>③(신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p> <p>1. 1991년 12월 31일까지 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p> <p>2. 1992년도 정수결정분 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하고, 19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심사  
보고서

1993. 5. 27.

##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5월 1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3년 5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7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1993년 5월 27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건축법규가 종전에는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서울시건축조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1991. 5. 31 법률 제4381호에 의거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건축법령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구 실정에 맞도록 구 건축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 위원수 구성 9~50인 (안 제4조 제1항)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안 제8조 제1항)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시행 (안 제14조)
-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야 함. (안 제17조)
  - 1.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 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립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함.

5. 교육연구시설중 학교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 기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완화(안 제28조)

공장일부 허용(인쇄, 봉제, 필름현상등)

1,2종 미관지구내의 세차장 허용

○ 4종 미관지구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1조)

2~4층→너비 20미터이상 도로변의 경우는

3층이상

#### 4.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재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한 市 지침에 의하여 건축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건축법개정(1991. 5. 31) 및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1992. 6. 1)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구조례를 만들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영등포구 건축조례를 제정함에 서울시 전체의 건축행정의 균형과 형평성을 참고하면서 안 제1조에서부터 제53조 및 부칙 4개항을 검토한 결과 종전의 건축행정의 규칙보다는 많은 조항이 완화된 내용으로써 앞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내용중 몇가지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 제4조(건축위원회 구성) 건축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당초 7~25명이었으나, 본 안에 9~50명 이내로 대폭증원된 것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과다한 위원수라고 생각되며 위원들에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둘째 안 제16조(건축지도원) 지도원을 기능적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위법건물 단속 및 지도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자격을 보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보유자들이 공무원 봉급수준으로 건축지도원이 되고자 하려는지 또 그들에게 책임의 한계를 어떻게 지울수 있을 것인지 염

려가 되는 반면 잘못하면 불법목인 등의 이유로 부조리 유팔을 가능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18조(식재등 조경기준) 조경을 위한 식재등 대지면적 165㎡에서 200㎡로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식재하여 도시경관은 물론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간혹 신축한 건물의 준공을 위한 조경을 하여 형식적인 조경조성을 지양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의 문제점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넷째 안 제19조(조경공사비의 예탁) 제2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는 사용검토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명으로 예탁하여야 한다.)을 은행까지 지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본위원의 견해로는 예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중은행에 예탁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안 제41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각 지역별로 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명시된 면적보다 많게 규정함으로 법령에는 하한선 이상으로 정한 것을 조례안에는 상한선으로 정함으로 적은 면적을 소유한 대지주가 건축을 하려고 할때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심사결과: 원안 가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 7. 첨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

의안 번호	168
----------	-----

제출년월일: 1993. 5. 17.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 1991. 5. 31일 건축법개정 및 '92. 6. 1일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영등포구 건축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함.

## 2.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7~25 → 9~50인으로 확대하고 소위원회 구성인원수를 5인이상 → 3인이상으로 완화 (제4조)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확대시행' (제14조)
- 조경기준의 완화 (제17조)  
대지면적 165m<sup>2</sup> → 200m<sup>2</sup>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완화 (제28조)
  - 도매시장, 소매시장 허용
  - 도시형 공장 일부허용 (인쇄, 봉제, 필름 현상 등)
  - 1,2종 매관지구내의 세차장 허용
- 4종미관지구의 높이제한 완화 (제31조)  
• 2,4층 → 너비 20m이상 도로변의 경우는 3층이상

##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 3 조(설치)**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조례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4.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계획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개축의 범위완화
7. 영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 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의 지정
8.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역안의 건축제한
9.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
10.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완화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의 심의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의 심의
13.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내의 용도제한 완화
14.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구역 지정
1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완화
16.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수시설 설치완화
17.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지정 및 건축제한
18.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허가
19.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

## 지정

20.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지하2층 이상 굴토  
시에 첨부된 흙막이 구조물, 5미터이상의  
옹벽 및 절취사면의 설계도면 심의  
21.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6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  
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  
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  
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소위원회) 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4조 제4항 및 제5항, 제7조의 규정은 소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9 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  
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10 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2 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제 3 장 건축물의 건축

제 13 조(건축허가수료) 법 제11조 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가설건축물) ①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  
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  
닌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  
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이하이고 높이 8미터이하  
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할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은 별표2와 같다.

제 15 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  
료) 구청장이 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6 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  
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 ②영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 4 장 대지안의 조경

제 17 조(대지안의 조경) ①영 제27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립상태가 앙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5. 교육연구시설중 학교건축물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 기준의 2분의 1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 18 조(식재등 조경기준)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구 분	식 재 밀 도 (제곱미터)	식재비율(퍼센트)
교 목	0.2본이상(다만, 흥고직 경 12센티미터, 수고 4 미터이상인 경우에는 0.1 본 이상)	수고 2미터이상의 교목을 50이상 식 재(상록수는 30이 상)
관 목	1본이상	

②구청장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수종, 수량 및 방법등 제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건축물의 후면, 측면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띠모양으로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옥상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곽선 주변에 수목을 줄지어 심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물 외곽선의 안쪽에 집단적으로 심어 그 부분이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수목을 식재하는 때에는 토심 깊이를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미리 그 부분의 단면도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구청장은 식수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이상)가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제 19 조(조경공사비의 예탁) ①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이상 또는 조경기사 1급 2인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건축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예탁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 20 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구청장은 영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화, 조각, 조형시설물등의 미술장식 품을 당해 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초과되는 당해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건축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 위치, 모양, 규모 및 건축물과의 조화여부등을 정함에 있어 당해건축물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제 5 장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제 1 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 21 조(용도제한)** 영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공동주택중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설소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학원에 한한다)

운동시설중 옥외골프장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판매시설

9. 위락시설

10. 관람집회시설

11. 공장

12.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총포판매소, 주유소, 저장탱크 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14. 운수시설

15.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6. 동물관련시설

17.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18. 교정시설

19. 방송·통신시설중 촬영소

20. 묘지관련시설

21. 청소년시설중 유스호스텔

**제 22 조(건폐율)**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3 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는 7층, 28미터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대지가 해발 70미터 이상 일때에는 5층, 20미터까지로 한다.

**제 24 조(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0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주변대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등이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 26 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이상을 뛰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2미터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까지의 거리 : 1미터

## 제 2 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 27 조(지구의 세분)** 미관지구의 지구의 세분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 28 조(용도제한)** ①영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기숙사
3. 근린생활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4. 정신병원, 격리병원
5. 공장(인쇄, 봉제,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업으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이하인 것으로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동물 관련시설(다만,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미터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0. 교정시설
11. 묘지관련시설
- ②영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 제3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③영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항3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2. 위락시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2. 세차장(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29 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 지정된 미관지구내의 기존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

1. 제1종 미관지구 : 600제곱미터
2. 제2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3. 제3종 미관지구 : 300제곱미터
4. 제4종 미관지구 : 200제곱미터
5. 제5종 미관지구 : 250제곱미터

**제 30 조(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띠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너비가 15미터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퇴한 부분에 대하여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1 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미관지구 : 5층이상
2. 제2종 미관지구 : 3층이상
3. 제3종 미관지구 : 2층이상
4. 제4종 미관지구 : 2층이상 4층이하  
다만,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층이상으로 한다.
5. 제5종 미관지구 : 2층이상

②구청장은 제1종 내지 제3종 미관지구로서 당해 도로연변이 도로보다 심히 낮아 건축물 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음으로써 그 도로에서의 전망이

유리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면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을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풍치지구안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5. 단독주택, 공동주택, 학교, 교회, 극장, 영화관,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체육관, 집회장, 관람장, 주유소, 기념관, 공장, 새마을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법 제5조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제 32 조(건축물의 규모)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6층이상인 건축물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등과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도로 등에 인접한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구 분	건 축 物 의 앞 면 길 이	건 축 物 의 옆 면 길 이
제1종 미관지구	18	9
제2종 미관지구	12	6
제3종 미관지구	12	6
제4종 미관지구	12	6
제5종 미관지구	12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등과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인접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제곱미터)

층 수	건 축 면 적
6층 이상	200
11층 이상	250
16층 이상	400

제 33 조(부속건축물의 규모)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4 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차면시설,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굴뚝, 환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을 도로, 광장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5 조(특정구역안의 건축제한) 구청장은 미관지구안에서 한국고유의 건축양식 및 주거생활환경 전통적 미관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 공고하고 건축물의 규모, 양식, 구조, 형태, 색채, 재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3 절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제 36 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①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근린생활시설중 공장, 안마시술소
2.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3. 업무시설중 일반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7. 공장

8. 창고시설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운수시설
  1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동물 관련시설
  13. 분뇨·쓰레기처리시설
  14. 교정시설
  15. 묘지관련시설
  16. 장례식장
- ②구청장은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37 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
  3. 기숙사
  4. 종교시설
  5. 격리병원
  6.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한다)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집회장중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10. 공장
  11. 창고시설
  1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 운수시설
  14. 자동차관련시설
  15. 동물관련시설
  16.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7. 교정시설
  18. 묘지관련시설
- ②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 4 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 38 조(용도제한)** 영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중 공해공장
  3. 발전소
  4. 묘지관련시설
- 제 39 조(건축물의 높이)** 구청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6 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 40 조(용적률의 완화)** 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공공용지등의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기준용적율

**제 41 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규모이상 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 90제곱미터
3. 준주거지역 : 9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 3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6. 근린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7. 유통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 33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400제곱미터

14.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 90제곱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를 제외한 대지로써 이 조례의 제 개정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준면적의 10분의 5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 42 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 1.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용 도	지역 구분	띄어야 할 거리 (미터)		적용 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미만	1천제곱미터이상	
공 해 공 장	준 공업 지역	2	4	모든 건축선
	기타 지역	4	6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준 공업 지역	3	4	〃
	기타 지역	6	8	

## 2.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용 도	지역 구분	띄어야 할 거리 (미터)		적용 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미만	1천제곱미터이상	
창 고 시 설	준 공업 지역	2	3	2이상의 도로 에 접한 경우 주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기타 지역	3	4	
운수시설 및 자동차관련 시설(운전, 정비학원을 제외한다)	준 공업 지역	2	4	2이상의 도로 에 접한 경우 주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기타 지역	4	6	

## 3.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

용 도	띄어야 할 거리(미터)	적용 대상 건축선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 시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 시설중 입시계 학원	4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와 주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3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와 주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4. 아파트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띠어 건축하여야 한다.

용 도	띄어야 할 거리(미터)	적용 대상 건축선
아 파 트	6	모든 건축선
관람집회, 종교시설, 장례식장	2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중 입시계 학원	3	주출입구가 면한 도로에 한한다.

제 43 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영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서 정한 것과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 : 미터)

구 분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 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 <sup>2</sup> 이상인 공해공장,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4.0이상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0이상)	3.0이상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1.5이상)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 <sup>2</sup> 이상인 판매 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3.0 이상	2.0 이상
공동주택	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1.0 이상 2.0 이상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3.0 이상 6.0 이상
기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 <sup>2</sup>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2.0 이상
건축물	전용 주거지역내 건축물 일반, 준주거지역내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내 건축물 500m <sup>2</sup> 이상 창고, 자동차관련시설(운전, 정비학원을 제외한다)	0.5 이상 0.5 이상 0.5 이상 3.0 이상
		1.0 이상 2.0 이상

제 44 조(합벽개발등의 완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에서는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5 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완화) ① 영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 미터이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 ② 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6층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한다.

제 46 조(높이제한 완화구역) 법 제52조 및 영 제85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14일이상 일반의 공람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다.

## 제 7 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 47 조(용도) ①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1층이하의 부분을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생활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제한 기간은 2년이내로 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 구청장은 재해위

험의 상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8 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구조
2. 철플콘크리트 구조
3. 철플, 철근콘크리트 구조
4. 철플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 49 조(부적합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조치) 재해 위험구역의 지정당시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건축물의 개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 8 장 보 칙

제 50 조(벽체보온 수도미터함 설치)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벽체에 설치하는 수도미터함은 영하 18 °C±1°C에서 12시간 경과후 수도미터동파(유리관 파손)나 수도미터 내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는 보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1 조(저수조 시설)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에 의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수조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하저수조 용량 25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조 내부는 2이상으로 구획하여 유지관리상 독립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저수조 내부의 물이 정체되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정류벽이나 내부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수조 바닥의 경사는 물이 잘 흐르도록 1/1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저수조 바닥에 고여있는 침전물의 청소를 위하여 방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52 조(온돌의 시공 등) ①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시공내용 및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3 조(시행규칙) ①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허가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축 허가 수수료 (제13조 관련)

(단위 : 원)

면적	금액		
	구분	건축 허가	용도변경허가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	1,500
	기타	7,000	3,000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500	2,000
	기타	15,000	8,000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0,000	15,000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5,000	40,00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0,000	75,000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0,000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0,000	
30만제곱미터 이상		1,200,000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제14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허 용 지 역	기 타
화 원	칼라알미늄 샷시	30제곱미터 이하	지역, 지구 건축제한에 따름	1층에 한함
관 리 사 무 실	칼라알미늄 샷시	30제곱미터 이하	지역, 지구 건축제한에 따름	1층에 한함
창 고 시 설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지역, 지구 건축제한에 따름	1층에 한함
기 계 보 호 시 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전용주거지역, 풍치지 구, 미관 지구는 불가	1층에 한함

## ※ 공통사항

-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
-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 3)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는 일치하여야 함.
- 4) 존치기간은 3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별표 3]

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 (제15조 관련)

(단위: 원)

면적	금액		
	구분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00	300
	기타	1,400	600
200제곱미터 이상	단독주택	900	400
	기타	3,000	1,600
1천제곱미터 미만		8,000	3,000
5천제곱미터 이상		15,000	8,000
1만제곱미터 미만		30,000	15,000
3만제곱미터 이상		60,000	
10만제곱미터 미만		120,000	
30만제곱미터 이상		240,000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